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94호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스타트업의 혁신과 제조 소기업의 장인정신을 연결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기반 제조창업의 활성화 도모

□ **예산규모 : 42억원**

□ **사업기간** : 선정후 ~ '26. 10월말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제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위해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추진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	바우처발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공급기업 매칭 및 사업수행
'26년 3월~		'26.4월		'26.5월 ~		'26.5월 ~

□ **신청대상** : 비수도권 동일(인접) 시·도내에 위치한 **스타트업과 제조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p.4 세부지원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특수관계 기업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 경우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26년 동사업에 선정된 기업
◈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6. 3. 20.(금) 10시 ~ '26. 4. 3.(금) 18시**

○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완료 시 수정불가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u>컨소시엄 구성기업이 각각 신청해야 함</u>

○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 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

○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선정 후 바우처 협약*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신청 불가**

*** 바우처 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완료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 계약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차년도 신청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서비스 계약**(운영기관-공급기업-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완료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사업 완료 후 수요기업이 정산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업 부담으로 서비스 대금 지급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가능

◈ 타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불가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 지역 이전 예정기업은 선정이후 7일 이내 사업장 이전 불이행시 선정 취소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 컨소시엄 : 스타트업(아이디어 보유) 1개사 + 제조 소기업(시제품 제작) 1개사
** 스타트업은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단, 선정 시 사업자등록 필수)

- 컨소시엄 구성기업이 모두 **비수도권 동일(또는 인접*) 시·도에 위치**하는 기업

*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도를 의미(단, 제주도는 비수도권 전체와 협업 가능)
** 지역 이전 예정 기업은 선정 이후 7일 이내 사업장 이전 불이행 시 선정 취소

○ **(지원규모)** 약 42억원 내외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 컨소시엄당 최대 1억원(업체당 최대 50백만원)

○ **(지원내용)** 협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승인금액 내에서 동시 진행 가능(단, 서비스 계약 마감 기한 내 한함)

○ **(참고사항)** 본 공고에 한하여 수요기업도 공급기업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수요기업 요청에 따라 기존 Pool 외 기업도 공급기업으로 참여 가능*

* 협업 과제 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사업 범위 내에서만 공급기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예시)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 경영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생산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 등	15
	AX·DX컨설팅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활성화·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50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 CAD설계, 목업, 시제품 금형, 공정 최적화, 시험생산 등	50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15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및 국외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BI 및 CI디자인 등	20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바우처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서비스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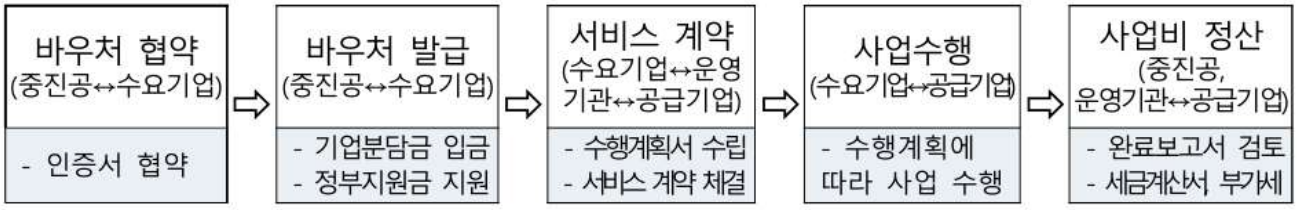

○ **(멘토링)** 컨소시엄에 대해 협업계획의 적절성, 진행상황 점검 등의 협업 촉진 활동을 실시하여 컨소시엄 내 분쟁, 과제추진 지연을 방지

○ **(정부지원금 비율)** 매출액별 차등(45~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 140억원 이하	45%	55%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최대 95% 한도, [별첨5] 참고)

○ **(바우처 사용기간)** '26년 10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협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가점사항)** 해당없음

○ (신청 및 서류 구비 유의사항)

- 컨소시엄 구성기업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각각 신청해야 함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협업계획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 서비스*** 활용 제출

* 원클릭 서비스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평가절차)** 요건검토·서면심사(4월2주) → 발표평가(4월3~4주) → 사업운영위원회(4월4주) → 최종 선정(4월말)

- **(요건검토)** 소기업, 제조업 등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서면심사)** 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우수성, 제조 역량, 협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단, 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심사 생략 가능

- **(발표평가)** 협업 역량, 협업 계획의 체계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컨소시엄 단위로 발표, 협업계획 관련 질의응답 진행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지원기업 최종 선정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사업 세부 내용 관련 문의사항	1357 (055-751-9523, 9851, 9254)
사업 신청 방법 문의사항	[별첨4] 참고
원클릭 제출 문의사항(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별첨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서식**

【서식 1】 협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협업 계획서(지역제조)

<table>
<tr><td rowspan="2">참여기업</td><td>스타트업</td><td colspan="3">(상호) (대표자명) (소재지-광역) (연락처)</td></tr>
<tr><td>제조소기업</td><td colspan="3">(상호) (대표자명) (소재지-광역) (연락처)</td></tr>
<tr><td>제품명</td><td colspan="4"></td></tr>
<tr><td>과제목표</td><td colspan="4">-
-
-</td></tr>
<tr><td rowspan="2">역할 분담</td><td colspan="2">스타트업(수요기업1)</td><td colspan="2">제조 소기업(수요기업2)</td></tr>
<tr><td colspan="2">▪ 시장분석, 제품요구사항
▪ 목표 원가·판매가, 납품기한 등
▪ 설계도면, 인증, 규제수준 제시
▪ 기능·사용성 중심 설계 수정
▪ DFM 피드백 반영
▪ 성능시험, 사용자 테스트 등</td><td colspan="2">▪ 제조 사전검토(공정, 소재, 공차 등)
▪ 납품가, 리드타임 등을 고려한 실제 제작 가능 스펙으로 기획 보정
▪ 제조 용이성 관점 설계 피드백
▪ 소재·부품 대체안 제시, 공정 확정
▪ 불량·오차 원인 분석, 개선 피드백</td></tr>
<tr><td>혁신역량</td><td colspan="2"><u>(아이디어 차별성)</u></td><td colspan="2"><u>(공정분야)</u> 정밀·금속가공, 금형·사출

<u>(보유장비)</u> 시제품 제작에 활용할 장비 기재</td></tr>
<tr><td>협업·소통 계획</td><td colspan="4">-
-
-</td></tr>
<tr><td>지식재산권 권리배분</td><td colspan="2">상호 협의하여 작성</td><td colspan="2">상호 협의하여 작성</td></tr>
<tr><td rowspan="5">바우처 사용계획</td><td colspan="2">스타트업(수요기업1)</td><td colspan="2">제조 소기업(수요기업2)</td></tr>
<tr><td colspan="2">컨설팅</td><td>▪ 시장분석</td><td>컨설팅</td><td>▪ 품질관리</td></tr>
<tr><td rowspan="2">기술지원</td><td>협업형</td><td>※ 협업하는 제조소기업에 지급하는 부분(필수)</td><td rowspan="2">기술지원 (시제품제작 등)</td><td rowspan="2">▪ CAD 설계(C업체)
▪ 목업(D업체)
▪ 목업(F업체)
▪ 금형(G업체)
▪ 시험생산(H업체)</td></tr>
<tr><td>그외</td><td></td></tr>
<tr><td colspan="2">마케팅</td><td>▪ 포장디자인(패키징)</td><td>마케팅</td><td>▪ 제품디자인(외관)</td></tr>
</table>

별첨 2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 불가

별첨 3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 평균 매출액은 **'23년~'25년**('표준재무제표 기준) 3년 간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3년.1.1 이전 설립 기업	- '23년, '24년, '25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3년 설립	- '24, '25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4년 설립	- '25년 매출액
'25.1月~'25.11月 설립	- '25년 매출액을 '25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5.12月 설립	- '25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6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개인** : 평균 매출액은 **'22년~'24년**(표준재무제표 기준) 3년 간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2년.1.1 이전 설립 기업	- '22년, '23년, '24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2년 설립	- '23, '24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3년 설립	- '24년 매출액
'24.1月~'24.11月 설립	- '24년 매출액을 '24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4.12月 설립	- '24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5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5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
'26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22.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2년, '23년, '24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4.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4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4.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4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 4 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서울인천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5층	02-769-6423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신천동) 월드타워빌딩 10층	02-2013-9851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가산동)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13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한국벤처투자빌딩 1층	02-2023-4313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7-50), 갯벌타워 14층	032-837-7031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	032-560-2363
경기강원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23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031-760-9004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고잔동), 1층(신용보증기금 빌딩)	031-783-0617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담원희캐슬 4층 431-434호	031-899-9115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36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3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9-9376
대전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25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나성동)	044-860-8307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87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043-230-683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연수동) 2층	043-841-3613
광주전라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66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3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나운동) 한화생명빌딩 4층	063-460-9812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061-280-8043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장천동)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56
대구경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33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2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054-288-7343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삼풍동300)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21 053-603-3322
부산경남	부산지역본부	부산 진구 중앙대로639, 23층(엠디엠타워)	051-630-7414 051-630-7413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45-5923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삼산동 1479-5) W-Center 14층	052-703-1123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26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충무공동) 이노휴먼씨티 3층	055-751-2903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층	064-754-5157

□ 관할구역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서울	서울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동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울서부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남부	서초구, 강남구
인천	인천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경기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	성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경기남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 김포시, 부천시
대전 세종	대전	대전시
	세종	세종시
충남	충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충북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광주·전남	광주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대구·경북	대구	대구시
	경북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울산시
부산	부산	부산진구, 강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경남	경남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

별첨 5 지방기업 우대 분류표

구분	비수도권 (보조비율 +5%)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우대지원 지역 (보조비율 +10%)	특별지원 지역 (보조비율 +15%)
서울	-	-	-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7개 자치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강화군, 웅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 화천군
충북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